

비시민권자를 위한 생활 보조금

새로운 법의 개정으로 인해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생활 보조금(SSI)의 지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 된 법은 현재 SSI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 귀화한 시민권자와 이곳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그리고 특정 비시민권자만이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이후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미국 시민권자와 귀화한 시민권자
- 맹인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1996년 8월 22일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비시민권자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특정 비시민권자로서 1996년 8월 22일 현재로 SSI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
- 이민법에 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서 총 40 분기의 노동을 한 비시민권자
 - 해당자의 배우자 및 부모의 노동시간을 SSI 수혜 목적에 한해서 40분기 노동시간에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그 기간에 영세 소득 또는 영세 자원을 근거로 한 연방 정부의 특정 혜택을 받았을 경우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한 노동 시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미 합중국 국군의 현역 군인이거나 명예 제대한

재향군인인 특정 비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부양 가족인 미혼 자녀, 사망한 재향 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그의 부양 가족인 미혼 자녀도 자격이 있습니다.

- 이민법 제 289조에 해당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으로서 미국 국외에서 탄생한 사람, 또는 인디언 보호법의 4(e) 조항에 의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종족
- 1988년에 발효한 대외 활동, 수출 자원 지원 및 관련 사업 세출법의 584조에 의해 미국인과 동양인의 혼혈 이민자로 입국 허용이 된 특정 비시민권자로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국 허용이 되고 난 후 첫 7년 동안만 SSI 가 적용됩니다.
- 쿠바와 하이티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1980년부터 발효된 피난민 교육 보조법 501(e) 조에 의하여 망명이 허용된 사람에 한해서 첫 7년 동안만 SSI 가 적용됩니다.
- 아래 날짜 이후 7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타 특정 비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법 207조에 의거 피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날짜
 - 이민법 208조에 의거 망명 허가를 받은 날짜 또는
 - 이민법 243(h) 조항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에 의거 국외 추방이 보류된 날짜 또는 이민법 241(b)(3) 조항에 의거 추방이 보류된 날짜

비시민권자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 보장국의 지방 사무소로 연락 하십시오.

신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SSI 혜택을 새로 신청하실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증명 또는 비시민권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국군에 복무한 비시민권자는 군 복무 증명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증명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권자의 증명 - 미국 출생 증명서, 여권 또는 귀화 증명서
- 비시민권자의 신분 증명서 - 이민국이 발행한 아직 유효한 Form I-94 또는 I-551 또는 이민 판사의 국외 추방 보류 명령이나 망명 허가 명령
- 군 복무 증명서 - 명예 제대를 나타내는 미국 군 제대증(DD Form 214)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비시민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신분 증명서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비시민권자의 한정된 수혜 자격

해당 특정 시민권자의 신분에 의해 7년간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우리가 7년간의 수혜 기간이 언제 마감되는 지를 알려주는 통고장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혜택을 중단하기 전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의료 보조(Medicaid)에 관한 내용

SSI에 의거 의료 보조를 받고있는 경우, SSI 수혜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시민권자이기 때문에 SSI 혜택이 중단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민 신분이 바뀌어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되거나 또는 40 분기의 노동시간(배우자 및/또는 부모의 노동시간을 합산한 결과)을 확보하게될 경우 즉시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귀화 증명이나 이민자 신분을 나타내는 기타 증명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보증인이 있을 경우

당신이 미국에 입국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

정 지원을 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을 것입니다. 이 확인서를 재정 증명서라 하며, 서명한 사람을 보증인이라 합니다.

당신이 보증인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미국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에는 그 보증인(및 그의 배우자)의 수입 및 재원을 당신의 수입 및 재원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거나 방문하셔서 시민권취득 수속 절차에관한 상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귀화 신청서(N-400 양식)을 얻으시려면 1-800-870-3676 번호에 전화 하십시오.

상세한 내용을 얻으시려면

사회 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얻으시려면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사회보장국의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에 연락하십시오.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전화는 주초와 월초에는 가장 바쁩니다. 그러하오니 급하지 않으시면 위시기를 피하여 주십시오. 전화하실 때는 항상 사회보장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귀가 어둡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중 어느때든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TTY" 무료 전화 번호 1-800-325-0778 번호에 연락하십시오. 인터넷(Internet) 접속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입수를 위해 <http://www.ssa.gov>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무료전화 번호나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용한 모든 통화내용은 비밀취급이 됩니다. 저희 사회 보장국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또한 한 사람의 사회 보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걸려 오는 전화 및 외부로 나가는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토록 하고 있습니다.